

「의회에 바란다」 민원 답변

민원일자	2026.8.19.
민원내용	주민세 대비 보훈명예수당 인상
민원인	임○○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의회를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우리 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와 처우개선,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4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타 지자체 대비 최고 수준의 예우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의 반영입니다.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은 제한된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재정 운용 및 서민 복지와의 균형에 대한 우려로 이해됩니다. 향후 우리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당연한 예우를 다하는 한편, 특정 분야에 재정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일반 시민의 복지 혜택이 저해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복지 예산과 재정 건전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시정 운영을 위해 주신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복지정책과(031-550-896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바란다」 민원 답변

민원일자	2026.8.19.																									
민원내용	주민세 대비 보훈명예수당 인상																									
민원인	임○○																									
답변내용	1. 안녕하세요. “담대한 도전, 빛나는 구리”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우리시 주민세(개인분) 부과액이 인근시에 비해 적절한지를 문의하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주민세(개인분)는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행정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지방세법」 제78조(세율)에 따라 표준세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구리시 시세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개인분 주민세 세율을 10,000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세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주민세 본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1,000원)가 부가되어 총 11,000원이 부과·고지됩니다. 나. 2026년 현재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88%인 199개 지자체(서울시 25개 자치구, 성남시, 부산 기장군 미포함)가 법정 한도를 채워 기본세율 10,000원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경기도를 기준으로 성남시를 제외한 31개 중 30개의 시·군이 개인분 주민세 세율을 10,000원으로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인 경우 지방교육세 세율이 25%로 12,500원 납부하는 시도 있습니다. 〈표 1 _ 2026년 경기도 주민세 탄력세율 현황〉 (단위 : 원) <table><tr><th>구분</th><th>본세</th><th>지방교육세</th><th>실제납부액</th><th>비고</th></tr><tr><td>구리시 등 대부분의 시·군</td><td>10,000</td><td>1,000</td><td>11,000</td><td></td></tr><tr><td>고양시</td><td>10,000</td><td>2,500</td><td>12,500</td><td>지방교육세 25%</td></tr><tr><td>용인시</td><td>10,000</td><td>2,500</td><td>12,500</td><td>“</td></tr><tr><td>시흥시</td><td>10,000</td><td>2,500</td><td>12,500</td><td>“</td></tr></table>	구분	본세	지방교육세	실제납부액	비고	구리시 등 대부분의 시·군	10,000	1,000	11,000		고양시	10,000	2,500	12,500	지방교육세 25%	용인시	10,000	2,500	12,500	“	시흥시	10,000	2,500	12,500	“
구분	본세	지방교육세	실제납부액	비고																						
구리시 등 대부분의 시·군	10,000	1,000	11,000																							
고양시	10,000	2,500	12,500	지방교육세 25%																						
용인시	10,000	2,500	12,500	“																						
시흥시	10,000	2,500	12,500	“																						

	다. 구리시의 주민세 부과 수준은 경기도 및 타 지자체와 유사한 수준이며,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적정하게 과세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부과된 세금은 구리시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징수한 세금이 구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구리시 세정과(☎031-550-2784)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